

## 이번에는 쇼핑물 가격 비교 특허 논란

한솔CSN의 BM특허 취득으로 쇼핑물 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번에는 쇼핑물 가격비교와 관련한 특허 논란이 불거졌다.

쇼핑물과 가격비교업체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는 김두성씨(44)는 쇼핑물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격비교 기능과 관련해 최근 특허를 획득했다며 이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씨는 마이마진·베스트바이어·아이디디지털 등 주요 가격비교 및 쇼핑물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신이 취득한 특허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특허침해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00년 2월 “인터넷 웹페이지를 이용한 영업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특허를 출원했으며 최근 이를 특허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는 소비자가 하나의 상품에 대해 다수의 회사에서 제시한 가격을 볼 수 있도록 웹 페이지에 다수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방식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품목록 표시 단계, 가격대별 표시 단계, 상품·회사이름·가격 입력 단계 등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과 영업방법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김두성씨는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온라인을 통한 영업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자체조사 결과 대부분의 쇼핑물과 가격비교업체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측면에서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문을 받은 대다수의 업체는 이미 일반화된 서비스를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격비교업체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제품

가격을 보여주는 가격비교 기능은 이미 지난 98년 부터 인터넷업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였다”며 “자세하게 특허 내용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서비스인 이상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뚜렷한 원칙이나 기술·시장정보없이 무분별하게 특허등록이 이뤄진다면 전체 쇼핑물 등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출처 전자신문

## 화상 채팅·회의 서비스 업체 특허 분쟁

한 화상 채팅 서비스 업체가 경쟁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엔메이트(대표 신범식)는 화상 회의 시스템 개발업체 컴리빙아이티(대표 원유용)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엔메이트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자사는 ‘인터넷기반 동영상 음성통화 서비스방법 및 그 시스템’에 대해 특허권(특허 등록 제 316434호)를 갖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기반 동영상 음성 통화에 대한 특허는 2000년 3월 8일에 출원됐으며, 2001년 11월 21일에 특허등록됐다. 엔메이트측은 회사 설립직후인 지난해 11월 특허권자로부터 권리 전부를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컴리빙아이티의 원유용 사장은 “화상회의 시스템은 특허가 출원되기 이전부터 일반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면 현재 화상회의 및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엔메이트의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정의 김병욱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컴리빙아이티 한곳과 침해 소송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다른 업체로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엔메이트는 컴리빙아이티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인 지난해 말부터 화상채팅 및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엔메이트의 특허권이 인정된다면 현재 화상 채팅 및 회의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모두 특허료를 지불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국내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약 50여 곳으로 추정된다.

출처 inews24

## 미국-디지털 저작권 분쟁 휴전의 의미

하이테크 업계 두개 단체와 음반산업계가 디지털 저작권 보호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접고 이 분쟁을 과격하게 해결하는 새 법안 제정을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MS), 델컴퓨터 등을 대표하는 업계단체와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디지털시대의 소비자권리와 저작권 소지자의 권리를 둘러싼 이해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장소가 정부가 아닌 “시장”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음반산업은 미 의회가 저작권 보호장치 의무설치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하이테크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하이테크 회사들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소비자들이 DVD 등 디지털제품의 개인적인 용도의 복제를 위해 저작권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는 양측이 디지털 음악과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상황을 둘러싸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분쟁에서 감정이 아닌 이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또 아울러 불법복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대책을 의무화하려는 정부안을 적극 지지해온 영화산업계를 고립시킨 하이테크 산업계의 “쿠데타”라고도 할 수 있다.

미국영화협회(MPAA) 회장인 잭 발렌티는 “영화협회는 디지털 저작권 보호분쟁의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년 동안 힘써 왔지만 관련 법개정을 포기할 뜻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발표문에서 “합리적인 모든 행동 대안이 고려 대상에서 배제돼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하이테크 업계의 최대 위협은 디지털 해적행위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의무화시킨 정부 새 입법안의 통과 가능성이었다. 영화산업계가 전폭 지지해온 이 법안은 지난해 미 상원에 상정됐다.

반면 음반산업계는 음악공유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있는 음악의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음반산업계는 소비자가 해적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해도 이를 합법화하도록 미 의회가 법을 개정할까 걱정하고 있다.

음반업계와 하이테크 업계는 휴렛팩커드(HP)와 인텔이 그랬듯이 양측의 연대구축을 반겼다. 인텔은 이날 양측의 발표를 음반회사와 기술 커뮤니티가 인터넷 불법복사를 막기 위해 공동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중요한 돌파구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텔의 홍보담당자 빌 켈더는 “이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정책논의를 하려면 업계간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합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점이라 평가했다.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맹(BSA)과 컴퓨터시스템 정책프로젝트(Computer Systems Policy Project)는 불법복사 방지기술 의무설치 반대를 위해 이번주 새로운 연대구축을 발표하고 로비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RIAA 최고경영자(CEO)인 힐러리 로젠은 RIAA가 이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권리 옹호자인 디지털컨슈머닷오그(DigitalConsumer.org)의 공동설립자 조 크라우스는 무단복제 방지기술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안에 대한 이들 단체의 반대합의를 반기면서도 디지털시대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측 합의내용 중에 어떤 것도 저작권보호와 소비자의 이른바 “공정한 사용권”의 올바른 균형을 잡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합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출처 전자신문

아달라”며 밀리오레동대문점에 세들어 영업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기가 판정한 1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IGLIORE와 MIGLSAMO는 서로 다른 상표이므로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MIGLIORE와 MIGLSAMO를 홀림체로 썼을 때는 그 모양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씨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홀림체로 된 MIGLIORE 상표를모방, 소비자들을 혼동케한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밀리오레는 95년부터 MIGLIORE 글자를 흘려 쓴 상표를 포장용 비닐봉투와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1년 8월 MIGLSAMO 상표를 취득한 이씨가 포장용 비닐봉투에 흘려쓴 MIGLSAMO 상표를 이용하자 상표금지 신청을 냈었다.

출처 한국경제

## 네오플 넷마블, “쿵쿵따게임” 저작권 분쟁

끝말잇기 놀이를 게임으로 만든 “쿵쿵따게임”을 둘러싸고 인터넷 게임 업체 네오플과 넷마블 사이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네오플의 이승훈 경영기획 실장은 “네오플이 서비스하는 쿵쿵따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넷마블이 최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며 “넷마블에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서비스금지가처분 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 “흘려쓴 변형상표 사용 못해”

상표가 서로 다르더라도 흘려쓴 변형상표의 모양이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다면 이 변형상표를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주)밀리오레가 “밀리오레(MIGLIORE)상표와 비슷한 밀사모(MIGLSAMO)상표의 사용을 막

밝혔다.

네오플은 넷마블이 지난 1월 말부터 서비스하는 쿵쿵따게임의 아이템을 비롯해 이용자환경, 게임진행방식, 벌칙방식, 힌트방식 등 게임내용의 80% 이상이 네오플의 게임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새길법무법인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받은 결과, 넷마블이 네오플 게임의 저작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법정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오플이 상표권을 출원한 쿵쿵따게임은 캐주얼 게임 포털 캔디바(www.candybar.co.kr)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재 300만 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네오플은 서울대에 재학 중인 20여명의 대학생들이 2001년 4월 설립한 학내 벤처로 허민씨(26)가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 실장은 또 “국내 대표 캐주얼 게임포털인 넷마블이 조그마한 벤처 기업에서 만든 게임과 똑같은 게임을 서비스할 줄 몰랐다”며 “넷마블이 쿵쿵따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네오플 측에 콘텐츠 제휴를 제안 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넷마블은 “쿵쿵따게임은 윗놀이게임 처럼 이미 오프라인에서 일반화된 게임”이라며 “네오플의 쿵쿵따게임 이전에도 끝말잇기 게임은 존재했기 때문에 네오플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출처 내외경제

## 야호-다날 특허침해 소송 종결

휴대폰 벨소리 업체인 야호와 다날간에 1년간 끌어온 특허전쟁이 종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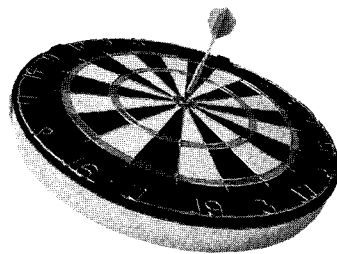
야호와 다날은 그동안 소송을 진행중이던 휴대폰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호는 지난해 7월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과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다날이 합의금 1억원, 로열티 3억원, 다날 외 1인 소유 실용신안 1건 및 현재 출원중인 특허 1건의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조건을 제시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다날은 “음성인식시스템을 이용한 벨소리 선택 방법”에 관한 특허가 야호의 정당한 소유며 벨소리 변경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사항임을 인정했다. 또 앞으로 이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제기를 끊기로 했으며 양사는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날 야호는 특허분쟁 해결 소식으로 장내내 강세를 유지하며 2일간 계속된 약세를 끝냈다.

이기돈 야호 사장은 “다날과의 이번 합의는 기술개발을 통해 취득한 정당한 특허권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날이 로열티 지불을 약속함으로써 60~70개에 이르는 동종업체에 대해서도 로열티 청구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판례번호】 거절사정(상표) 2001.11.13.  
대법원 2001후2443 판결**

**【판시사항】**

**【TD0200】**

출원상표 “TRIPLE CROWN”과 인용상표 “CROWN + 크라운”은 유사하다.

**【원고, 피상고인】** 밴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7. 6. 선고 2001허13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 “TRIPLE CROWN”을 보고 3관왕이라는 뜻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TRIPLE’과 ‘CROWN’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영문자 ‘CROWN’과 한글 ‘크라운’이 2단으로 표기된 인용상표 1이나 영문자 ‘Triple’로 된 인용상표 2와는 전체적 외관이 다르며,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트리플 크라운’으로 호칭되고 ‘(각종 운동경기에서의) 3관왕’ 정도로 관념될 것이므로, ‘크라운’으로 호칭되고 ‘왕관, 정상’으로 관념되는 인용상표 1이나 ‘트리플’로 호칭되고 ‘3배의, 세 겹의’ 등으로 관념되는 인용상표 2와는 호칭 및 관념도 다르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

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TRIPLE’이나 ‘CROWN’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보고 ‘3개의 왕관’으로 인식할 수 있고, 배수 또는 개수 개념의 ‘TRIPLE’이 ‘CROWN’을 단순히 수식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CROWN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스포츠분야에서 3관왕의 의미로 곧잘 사용된다 하더라도, ‘CROWN’ 자체가 ‘최고의 영예, 정상’의 의미로도 관념될 수 있으므로 ‘TRIPLE’과 ‘CROWN’을 단순히 합쳐놓은 정도의 의미 이상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를 CROWN으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인용상표 1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이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주심)  
대법관 박재윤

**[판례번호] 무효(상표) 2001.11.13.  
대법원 2001후1198 판결**

**[판시사항]**

**[TD0281]** 등록상표 “NUTRACEUTICALS”와 인용상표 “NUTRA”는 비유사하다.

**[TD0314]** 등록상표 “NUTRACEUTICALS”가 ‘NUTRA’ 부분과 ‘CEUTICALS’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호칭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피고, 상고인]** 오즈카 세이야쿠 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두현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3. 9. 선고 2000허83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NUTRACEUTICALS”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453646호)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되고 “NUTRA”와 같이 구성된 인용상표들(“상표등록번호 제244774호 및 제209544호”)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외관이 상이하고, 모두 조어로서 관념은 대비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에는 “뉴(누)트라슈티컬(칼)스(즈)” 또는 “뉴(누)트라세(쎄)우티컬(칼)스(즈)” 등으로 7음절 또는 8음절로 발음되어 일반인에게 친숙하지 아니한 긴 음절의 영문자이고 그 음절의 수가 많을 뿐더러 그 구성도 14자의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전체

적으로 인식하고 호칭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또 우리 나라 일반 국민의 외국어 인식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NUTRA’는 ‘중립의’, ‘공평한’ 등의 의미를 갖는 ‘NEUTRAL’에서 ‘L’이 생략된 것으로 인식하기 쉬운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다 친숙하게 인식되는 ‘NUTRA’와 그 의미조차 파악할 수 없는 ‘CEUTICALS’로 분리하여 관찰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NUTRA’만에 의하여 ‘뉴(누)트라’로 약칭되는 경우 인용상표들과 그 호칭이 동일하며,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뉴(누)트라슈티컬(칼)스(즈)” 또는 “뉴(누)트라세(쎄)우티컬(칼)스(즈)” 등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인용상표들의 호칭과는 처음 3음절이 동일하고, 특히 알기 어려운 긴 음절로 된 외국 문자의 경우에는 일반 거래사회에서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이라고 할 수 있어 그 특징적인 어두 부분에 해당하는 ‘NUTRA’만에 의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이므로 양 상표들은 이 점에서도 그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후13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NUTRACEUTICALS"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중 'NUTRA'는 '중립의', '공평한' 등의 의미를 가지는 'NEUTRAL'과 알파벳 5자가 공통하고 발음도 유사하게 청감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알파벳 'E' 및 'L'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고 그 의미에 있어서도 별다른 뜻이 없는 'NUTRA'와 'NEUTRAL'은 전혀 상이하어,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생소한 조어인 'NUTRA'가 알기 쉬운 'NEUTRAL'라는 단어에서 단지 알파벳 일부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나머지 구성부분인 'CEUTICALS'보다 친숙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NUTRA' 부분과 'CEUTICALS'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이나 발음이 길고 또 우리나라의 언어관행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그 호칭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생소한 경우에는 특징적인 어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대비하여 보건대, 우선 양 상표들은 외관에 있어 상이함이 명백하고, 다음 그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뉴트라(또는 누트라, 이하 '뉴트라'라 한다)슈티컬스" 또는 "뉴트라세우티컬스"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들은 "뉴트라"로 호칭되어 음절수에 차이가 있고, 또 이 사건 등록상표는 뒷부분의 '슈티컬스' 또는 '세우티컬스'가 앞부분의 '뉴트라'보다 강하게 발음될 것임

로, 비록 '뉴트라'의 호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상이하게 청감되며, 관념 또한 양 상표들 모두 조어상표인 관계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양 상표들이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대법관 서성 대법관 유지담(주심)  
대법관 배기원

## 캐논, 독일회사와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자료원 : 요미우리신문 2003. 1. 17]

캐논은 1월 17일 독일의 사무용품 제조·판매 회사 「펠리칸·하드 카피」 등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캐논이 특허 침해로 주장한 것은 펠리칸·하드 카피사의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인데 캐논은 내부 구조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해 작년 4월 독일·Dusseldorf 지방법원에 제소, 동지방 법원은 펠리칸·하드 카피사에게 특허 침해품의 판

매와 유통 금지를 명했다. 캐논은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캐논은 「오랜 세월 방대한 연구 개발 투자로 축적한 지식 재산권」을 경영 전략으로 국내외에서 중시하고 있고, 작년 12월 한국의 전자 부품 메이커 삼성 전기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바로 직후다.

미특허 상표청이 발표한 작년의 특허 등록 건수의 기업별 랭킹에서 캐논은 미IBM에 이어 2위에 들어가 있고, 지적 재산 전략이 앞선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1월 27일 덴마크의 인기 밴드, 아쿠아의 히트곡「사랑하는 바비걸」이 바비인형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해서 인형 제조사인 마텔이 MCA 레코드를 제조하였던 소송에서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마텔사는 위 노래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바비 인형 상표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이 노래를 제작·판매한 MCA 레코드를 제조하였었다. 위 노래는 바비인형이「금발로 보여 좋지 만 머리는 나쁜 여자 아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life in plastic, it's fantastic」등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1997년에 쏘美에서 140만매를 넘는 판매를 기록했다.

연방 최고법원은 위 노래는 패러디이고 동시에 사회사상을 논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 바비인형을 둘러싼 상표권 소송

[자료원: 일본아후뉴스 2003. 1. 28]

## 단신

### “직접업인 못산야”... 미국인, 최고 발명품 선정

미국인들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발명품으로 칫솔을 뽑았다.

CNN방송은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MIT의 레멜슨 MIT 발명지수가 미국 전역 성인 1000명과 10대 400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발명품 5가지를 꼽도록 한 결과, 칫솔이 1위(10대 34%, 성인 42%)를 차지했다. 다음은 자동차, PC, 휴대전화, 전자레인지 순이었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 대변인 리처드 프라이어 박사는 “단 의미가 있는 결과”라며 “자동차나 컴퓨터는 언제라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이빨은 평생 당신과 함께 있지만 새 것으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ADA에 따르면 칫솔은 1498년 중국의 한 황제가 빠르린 손잡이에 역센 돼지모鬃을 박아 사용한 것이 처음이다.

돼지털 칫솔은 그후 유럽에서 유행했지만 값이 너무 비싸 가난한 집에서는 가죽 여러명이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러다 1938년 듀폰사가 돼지털을 대체할 나일론 솔을 개발하면서 일반 미국인들에게 보급된 것이 ADA의 설명이다.

이밖에 조사 대상자 가운데 10대 56%와 성인 60%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암치료법이 개발될 것으로 믿는다고 응답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